

종교와 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

김 용 표
동국대학교

〈요 약〉

본 논고는 종교와 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다종교사회에서의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종교교육 방향을 제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교와 교육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종교적 진리는 정신적인 궁극적 자유를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의 목표도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는 데 있다. 학교 교육에서의 종교자유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되고 있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교육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와 타종교에 관한 관용은 세계종교의 성자들이 한결같이 역설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의 도처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교리나 감정이나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로 이익 집단화하려는 비종교적인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원주의 시대의 종교자유 문제는 이제 단순한 종교적 관용의 단계를 넘어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야 하며, 종교교육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극복 방안은 다원주의적 종교교육과 종교자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핵심 주제어 : 종교교육, 종교자유, 다원주의,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자유

I. 문제의 소재

본 논고는 종교와 교육의 본질로서의 자유의 문제와 다종교사회에서의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종교계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종교교육 방향을 모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교와 교육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종교적 진리는 정신적인 궁극적 자유를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의 목표도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는 데 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함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應無所住 以生其心)”¹⁾는 붓다의 가르침이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²⁾라는 예수의 가르침, 또는 무함마드의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³⁾ “너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신도가 되게 하려느냐?”⁴⁾라는 가르침은 종교의 본질이 자유에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제도화는 종교의 본래 면목과는 다르게 전통이나 교리의 테두리에 종교인들을 가두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교인들이 종교적 진리보다는 교단의 이익에 더 집착하기 시작한데서 종교의 비극이 있다. 종교자유 문제도 본질적으로 종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배타적 종교성에 그 원인이 있다. 종교의 배타적 진리주장은 어느 종교에서나 발견되는 요소이나 그 표현의 정도는 종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극복 방안은 다원주의적 종교 교육과 바른 종교자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엔 <인권선언문> 18조는 “인간은 누구나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그의 종교나 신념, 그리고 종교를 변경하는 자유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종교나 신념을 교육, 실천, 예배, 그리고 집회에서 발표할 자유를 포함 한다”고 선언하였다.

1) 《金剛般若波羅密經》<제10 莊嚴淨土分> T. 8, no.235, p.749c.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 味觸法生心 應無所住 以生其心”(웅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또는 소리, 냄새, 맛, 감촉, 몸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웅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또는 ‘相과 非相 즉 형상과 형상 아닌 것을 동시에 볼 때 여래를 보리라’ 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제5 如理實見分>:

2) 《요한복음》 8:32. “veritas vos liberabit”(The truth will set you free). veritas(진리:1격) liberabit(자유롭게 하리라. 과거미래형-3인칭) vos(너희:4격). 이 설교는 본래 종교의 본질이 자유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 14:6)라는 맥락 속에서 ‘예수의 구원과 해방의 진리와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자유와 진리, 길과 생명에 대한 기존의 도그마를 해체하여 ‘자유를 진실로 자유케 하는 해석의 자유’가 필요할 것이다.

3) Qur'an, Surah 2: 257 (이슬람국제출판국, 1988), p. 97.

4) Qur'an, Surah 10: 100-101, 위의 책, p.406.

이에 더하여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제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용하였다.⁵⁾

신앙의 자유는 내적 정신적 자유로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대표하는 자유로 인정되어왔다. 양심의 자유란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믿는 바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상의 자유의 하나이며 또한 종교 자유의 근본을 구성하는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이 근거이며 다른 자유가 설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신앙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내적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떠한 제약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⁶⁾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의 선택과 변경, 무종교의 자유 및 신앙고백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적 행위는 개인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종교의식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종교교육의 자유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와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신앙의 존중과 아울러 그 신앙의 실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 행위의 자유에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⁷⁾ 선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선교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용인한다면 학교는 비교육적 현상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이다.⁸⁾ 종교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차원의 종교행위의 자유의 양면성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면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종교에 입각한 교육이념을 내세우는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항상 구성원의 개인적 신

5)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제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선언>은 완전한 종교자유 실현에는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1981년 이 선언문이 채택되기까지 20여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국가 헌법과 관련하여 생략된 종교적 권리가 많다.

6)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금,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 금지, 종교의 정치 간섭금지 등의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제19조에 따로 시설하고 있다.

7)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종교교육의 법적인 고찰에 대해서는,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고시계》 95/10 참조할 것.

8)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헌법 31조 1항 및 6항의 규정 및 이에 따른 교육법상의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대법원판례 92도1742, 1992. 12. 22). 교육법 제5조 2항: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종교자유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앙의 자유와 학교 당국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문제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의 담임교사의 학급 행사에서 단체기도 인도, 평준화된 중고등학교에서의 강제 예배참석, 대학에서의 신앙 고백적 예배강요, 중립학교에서 종교 문제로 인한 교원의 해직과 교권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법적 문제로 비화된 예가 허다하다.

학교 교육에서의 종교자유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은 보편적 지식을 전수하는 장이지 선교의 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삼으려는 비교육적 이기심이 학교교육에서 종교 자유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에는 종교와 교육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립학교가 많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도 이러한 교육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중립학교의 건학이념은 교육적 차원에서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학교를 세운 종교재단에게도 유익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문제의 또 다른 원인은 교육정책 당국에게도 있다. 이른바 교육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학교에게는 학생선발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현행 한국 중립학교에서의 종교자유 문제는 실로 이러한 교육당국의 원인 제공에 기인하는 바 크다. 여기에서의 논의의 초점도 이러한 종교교육의 제 상황과 딜레마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

II. 종교에서의 자유와 비관용

1. 종교적 진리와 자유

일반적으로 ‘자유(自由, freedom)’란 사회심리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그러한 심리적 상태에 있을 의미한다. 법률적 의미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적 진리는 인간 정신의 궁극적 자유와 절대적 해방을 지향하고 있다. 진리는 자유를 그 속성으로 한다. 참된 종교는 인간을 종교 안에 가두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터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붓다는 《금강반야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에서 “만약 육신의 겉 모습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언어와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하는 이는 그릇된 길을 가게 되어 결코 여래를 보지 못할 것이다”⁹⁾라고 설하고 있다. 모든 형상과 사상이나

9) 《金剛般若波羅密經》<제26 法身非相分> T. 8. no 236, p. 752a.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언어에 대한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가르침은 종교의 본질이 외적 제도나 형상, 또는 언어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은 알지 못합니다”¹⁰⁾라는 예수의 가르침에도 교리적 종교 해석보다 우선되어야 할 종교성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도가의 장자도 모든 인위적 분별로부터 벗어난 철저한 절대자유를 삶의 이상으로 삼았다. 종교적 성자들은 ‘육신의 자유’를 넘어서 ‘정신적 자유’, 외적 요소로부터의 자유보다 ‘마음의 해탈(心解脫)’¹¹⁾을 중시한다. 종교교육도 이러한 자유사상 전통의 회복을 통해 현재의 난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에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서 타종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는 특정 종교 교단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타종교에 대한 관계 설정의 문제는 교단의 정체성 확립이나 교세의 확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타종교와의 공존을 용납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는 편협한 배타적 교리 때문이다. 단순한 교리적 이유 이외에도 교단의 외형적 확장을 바라는 사회적 이유도 있다.

세계종교사에 나타난 종교는 대부분 관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종교는 비관용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하였다. 종교의 자유의 침해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관용성에서 왔다.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편협한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절대적 맹신과 불신자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¹²⁾ 역사적 종교의 조직화된 공동체는 이기적 집단 의식이 강했다. 특히 국가와 종교가 동일체가 되었을 때 이교도는 쉽게 그 국가와 종교의 공동의 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 구조 속에서 다원주의 담론은 위험시 되었으며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배려는 배교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종교 배타주의의 담론은 ‘진리를 특정 종교가 독점할 수 있는가?’ 하는 반문을 던지게 한다. 진리는 본래 열려있는 것이다. 누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종교 전통과 그 전통이 만들어 낸 교리는 상대적인 문화 현상일 뿐이다.¹³⁾ 진리의 역사성과 상대적 관계성에 대한 인식에서 절대 진리에 대한 환상은 깨어질

10) 《요한 1서》 4: 8.

11) 탐욕·분노·어리석음 등의 번뇌로부터 無礙自在한 정신적 경지를 얻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12) Roland Bainton은 종교 박해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박해자는 그가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둘째,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강제가 효과적이다. Roand H. Brainton, *The Trail of Religious Liber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1), p.17.

13) 종교적 진리의 비절대화 담론은 19세기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서구에서 새로운 진리관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Leonard Swidler는 역사학적, 사회학적, 언어철학적, 해석학적, 실천적, 대화적인 진리관의 재해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Leonard Swidler, “Interreligious and Interideological Dialogue: The Matrix for All Systematic Reflection Today,”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p.5-7참조. 1990년 후에 나온 스위들러의 저술에서는 이 네 요소 외에도 의도성(intentionality)과 대화(dialogue)의 요소를 추가하여 진리의 비절대화를 설명하고 있다. 대화적 진리관이란 세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범주와 언어를 통해서만 말하고 교통할 수 있으므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이해해 나간다는 것이다. Leonard Swidler, *After the Absolute: The Dialogical Future of Religious Reflection*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리와 전통의 장벽을 넘어서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체험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대한 종교의 심층에 있는 공동기반을 탐색하려는 종교다원주의 담론에서 종교자유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샘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교와 기독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모든 종교 전통이 배타적이고 비관용적 태도를 지녔던 것은 아니다.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아시아의 종교들이나 신비주의 전통의 종교들은 타종교를 자기 종교 내부로 수용하려는 포괄주의적 입장이었다. 붓다는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평화를 가르쳤으며, 불교는 그 전파과정에서 기존의 신앙과 조화로운 공존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¹⁴⁾ 붓다를 모든 다툼에서 떠난 이(ranamjaha)라고 부른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데, 세상이 나와 다투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만일 있는 그대로의 법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¹⁵⁾

《범동경(梵動經, Brahmajāra sutra)》에는 당시의 인도 종교사상계의 62종의 견해에 대하여, “여래는 이미 이러한 여러 견해들의 장단점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다도 더 훌륭한 것도 알고 있지만 지식에 집착함이 없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적멸(寂滅)과 해탈을 얻었다”¹⁶⁾고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타종교와 다투지 말라’는 붓다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인도 역사상 최초로 통일 국가를 완성한 후 불교의 정법에 의한 정치를 이상으로 했던 아쇼카 왕(B.C.E. 272-232 재위)도 비문 칙령에서 종교의 자유의 장전이 될 만한 신념을 기술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만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이의 종교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행동이 그와 같지 않으면 자신의 종교의 무덤을 파는 것이며 또한 다른 이의 종교에 해를 끼치는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pp.7-14 참조.

14)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동국대 출판부, 2002), pp. 130-150 참조.

15) 《雜阿含經》37경 <我經>, T. 2, no.99, pp. 8b. “我不與世間諍 世間與我諍 所以者何 比丘 若如法語者 不與世間諍.”

16) 《남전대장경》6, 52-53.

것이다. 그러므로 화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모든 이의 종교의 교의에도 귀기우리도록 하라.¹⁷⁾

아쇼카 왕은 불교 신자였지만 바라문교, 자이나교, 아비지카교 등 당시 인도의 제종교를 보호하고 후원하였다.¹⁸⁾ 그는 “모든 종교인이 도처에 머물기를 바란다”¹⁹⁾고 비석에 새겨 넣을 정도로 모든 종교의 감화가 고르게 융성하고 ‘서로 친근하게 지내기를 발원했다’.²⁰⁾ 이러한 불교의 타종교에 대한 관용은 불교역사를 관용의 역사로 만들게 했던 것이다. 불교에서 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²¹⁾

첫째, 불교는 사상과 언어와 진리 탐구의 자유를 가르치고 있다. 붓다의 사상의 자유는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던 독특한 것이다.²²⁾

둘째, 불교는 배타적 절대 진리주장이나 도그마적인 진리관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교가 타종교에 대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불교만이 진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²³⁾ 진리는 누구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

셋째, 대승불교에 와서는 법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만일 진리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인해 진리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애착은 타종교에 대한 증오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금강경》에는 여래가 설한 법까지도 절대 진리로 집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²⁴⁾ 대승의 공(空, śūnyatā)의 가르침은 무한한 개방성, 즉 끊임없이 열린 테두리 없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열린 진리관은 모든 종

17) 아쇼카왕 <마애조각> 제12장, 中村元, 석진오 역, 《종교와 사회윤리》(경서원, 1999), pp. 251-316 참조.

18) 아쇼카왕은 敎法大官에게 바라문교를 보호케하였다. <석주조각> 제7장, 中村元, 위의 책, p.283-284.

19) <마애조각> 제12장.

20) <석주조각> 제6장.

21) Yong Pyo Kim, “Religious Freedom in Buddhism”, *Fides Et Libertas: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 2002, pp. 66-73 참조.

22) Kālāma-sutta. Anguttara Nikāya 3-65 (PTS, Gradual Saying); “Theose of Kesaputta”, pp.170-175; 《중아함》16경<伽藍經>(大正藏 1), pp.438b-439c. “거듭 들어서 얻어진 지식(anussavena)이라 해서, 전통(paramparāya)이 그러하다 해서, 소문에 그러하다 해서, 종교성전에 쓰여져 있다(pitaka sampadānena) 해서, 또는 이성이나 추측에 근거한 지식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의 신뢰성(bhavyarupataya) 때문에, 또는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samaṇo no garu) 때문에 그대로 진리라고 따르지 말라”.

23) “여래가 이 세상에 나타나든 출현하지 않든 간에 현상의 본성, 현상의 규칙적인 형태나 조건성으로서의 연기법은 존재한다. 이를 여래는 발견하고 이해하고 드러내 보이고 가르쳤다.” 《상응부경전》, II. 25.

24) “수보리여! 여래가 스스로 “나는 설해야 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 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설한 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진리를 설한다고 해도 설할 진리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비로소 진리를 설한다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금강반야바라밀경》<제21 非說所說分>

교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넷째, 불교는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평화를 가르치고 있다. 불교도들은 타종교와 다투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왔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승인 신라의 원효(元曉, C.E. 617-686)는 화쟁과 회통의 논리를 제안하였다.²⁵⁾ “열고 합함이 자유자재하고 주장과 논파가 서로 걸림이 없다(開合自在 立破無碍)”²⁶⁾라고 하는 화쟁의 경지는 원용 무애한 궁극적 자유를 성취한 이의 마음의 작용이다. 모든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무애와 자재에 바탕한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종교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종교간의 우열이나 폐쇄된 진리 주장이나 종교 이기주의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의 종교적 편협성과 독선적 태도에 대해 비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²⁷⁾ 예수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판한 바라세인에게 “건강한 이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²⁸⁾고 답하고 있다. 예수의 이러한 입장은 타종교인 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관용과 사랑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3세기에 터툴리안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며 자연의 특권이다. 누구나 그가 기뻐하는 대로 예배해야 한다”²⁹⁾고 하였다.

20세기 후반에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자유 선언 (Dignitatis Humanae)>을 발표하였다.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은 양심을 도덕성의 기본 규범으로 선언하며 인간 인격의 존엄성과 종교자유 권리를 밝히고 있다.

본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이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자유는, 각 사람이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나 그 밖의 온갖 인간적 권력의 강제를 받지 말아야 하며, 그와 같이 종교문제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또 사적 혹은 공적으로, 단독이나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데 방해받지 않음에 있다. 그 위에 종교자유 권리는 실로 인격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러한 인격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과 이성 그 자체로써 인식되어 있다. 종교자유에 관한 인격의 이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되어 시민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³⁰⁾

25) 원효는 ‘종요(宗要)’와 ‘개합(開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진리 주장의 화해를 시도했다. 여기에서 “종(宗)은 널리 펼쳐 놓는다는 말이며, 요(要)란 이를 다시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원효가 말한 ‘합(合)’의 세계란 붓다가 깨달은 최고경지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26) 원효, 《대승기신론소》 서문, 한국불교전서 1권, p. 697c.

27) 《마태》 21:12-45, 23:1-39; 《누가》 7:31-50, 9:51-56, 10:25-37, 15:1-32, 《요한》 4:7, 21, 24, 46 등 참조.

28) 《마태복음》 9:10-13,

29) Arnold Toynbb, ed, *The Christianity: Judaism, Hellenism and Background to the Christian Faith* (New York: World Publishing. 1969), p.350.

바티칸 공의회 폐막 하루 전인 1965년 12월 7일에 반포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인간 존엄성, Dignitatis humanae)>은 가톨릭 교회가 현대사회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종교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문헌으로 가톨릭 포괄주의 입장을 바탕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타 종교인에게 보여주는 존중과 수용의 자세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이 종교에 관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할 권리를 갖고, 종교를 믿을 때 개인의 내적 생활이나 사회 안에서 외적으로 믿는 것 역시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개인의 자유와 종교 단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함께 발표된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Nostra Aetate)>은 비그리스도교적 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성을 높이 평가하고³¹⁾ 그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류가 날로 더욱 긴밀히 결합되고 여러 민족들 사이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어 가는 현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계종교에 대한 가톨릭의 새로운 시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선언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온갖 차별과, 혈통이나 피부색이나 사회적 조건이나 종교적 차별의 이유로써 생겨난 모든 박해를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아 배격하는 바이다”고 결론 맺고 있다.

III. 종교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

1. 자유교육과 종교

교육은 인간의 자유로운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려는 작용이다. 교육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통합된 지식과 비전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리주입식의 교육에 의한 왜곡된 인식의 방법은 적극 피해야 할 것이다. 사물 전체를 아무런 굴절이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데는 학습자의 자발성과 주체적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인간에게 절대 자유를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종교교육은 인간

3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종교자유 선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pp.613-631. <종교 자유 선언>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격렬한 논의가 이뤄지고 6번에 걸쳐 수정될 정도로 큰 논란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1)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Nostra Aetate)>은 종교가 지니고 있는 공통의 삶의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인간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인생의 숨은 수수께끼들의 해답을 여러 가지 종교에서 찾고 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의와 목적은 무엇인가? 선이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과 목적은 무엇인가? 진실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후의 심판과 판결은 어떤 것인가? 마침내 우리 자신의 기원이자 종착역이며 우리의 실존을 에워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마지막 신비는 과연 무엇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pp. 607-608.

성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적 영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영혼을 자아의 집착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대의 학교 교육에서의 종교의 문제도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시키려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종교교육이나 자유로운 정신의 계발을 저해하는 교육행위는 본질적으로 비종교적이며 비교육적이 아닐 수 없다.

자유교육론자들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교리주입식 세뇌교육은 합리적 비판능력과 개방적 사고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³²⁾ 존 셸리(John Sealey)는 “교육의 궁극적 기반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며 선입견이나 교조적 사고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은 가변성이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좌우된다”³³⁾라고 하였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종교적 신조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를 과연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³⁴⁾ 교육은 교화(Indoctrination)와는 명백하게 다르다. 학교교육은 자유로운 지성의 계발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교육이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타고난 인간성을 완전하게 발현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주입식 교화 교육은 자유로운 지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독선적 편견을 심어주어 인간 사이의 장벽을 쌓는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그마적 종교 교육은 학교에서는 자제해야 할 교육이다.

그러나 현행 종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리주입식 교육의 위험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학생 개인의 신앙의 자유 침해라는 사건으로 종종 나타나고 있다.³⁵⁾ 이러한 교육적 상황에서 2006년 4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 종립학교에 내린 종교교육 지침은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³⁶⁾ 이 지침에 나타나는 일들은 실제로 종립학교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사실상

32) 황규호, <자유교육에서의 종교의 위치>, 《도덕교육연구》제6집(1994), p. 92 참조.

33) John Sealey.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5), p. 21.

34) Paul Hirst, H. “Education, Carethesis and Church School”,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81) 3-3, pp. 85-92 참조.

35) 종교의 자유 침해사례에 대한 연구로는, 최철운, <종교의 자유:침해의 유형과 그 구제를 중심으로> 《일반법학》 8(2003), pp.135-154; 최윤진, <청소년 인권으로 본 학내종교자유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학교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06), pp. 52-65 참조할 것.

36) 서울시 교육청의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공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종교 과목 개설시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편성. (나) 학교나 학년 단위로 한 곳에 모여 특정 종교의식 실시 금지. (다) 특정 종교의 의식 활동을 교과 내용에 포함한 지도 금지. (라) 정규 교과 시간 외 종교 활동 실시 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하에 실시. (마)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특정 종교 교육 금지 바. 특별활동 시 특정 종교 활동 제시 금지. (사) 수행평가 과제로 특정 종교 활동 제시 금지. (아) 학급 내 순번제로 돌아가며 종교 관련 의식 행사 금지. (자)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사항 (학생회 임원 출마자격 제한, 의식행사 불참자에 대한 개별상담지도 및 특별 면학지도 등). 이러한 사례 외에도, 예배 강요, 헌금 강요, 성경 구입 및 휴대 강요, 교회 보내기, 개종 강요, 입학 서약 강요, 특정 음식 금지, 동아리 설립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지침은 신앙적 종교교육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는 종립학교 재단 측에서 보면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종교과목 외에 선택과목을 복수로 개설할 때 종교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침이 발표된 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사학연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탄압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에 강력한 항의와 압력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 교육청 당국은 이에 대해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공문은 기존의 종교교육 지침 중에 ‘종교교육 과정 중 자제해야 할 점’을 예시 든 것 뿐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보지는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기는 하였다.³⁷⁾ 그러나 교육정책 당국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내고도 다시 유감을 표시한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한 사학계의 움직임과 연계되어 한국의 교육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입장을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다. 학내 종교행사나 종교의식에 그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이 과연 종교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타당한가? 아직도 학교에서 신앙적 종교교육을 당연시하는 일부 종교계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종교교육이 가능해지려면 평준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서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되는 것이다.³⁸⁾ 즉 공교육과 종교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로운 신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종교는 특정 진리의 절대성 주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속성이 있

나 학생회장 입후보 등에서의 차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왕따, 실기시험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각종 불이익 부과 종교수업 거부나 예배 거부 등의 경우 징계, 제적 등의 처분, 종교과목 평가시험 및 성적 반영, 실기시험에서의 불이익 부과, 타 종교인에 대한 무배려, 타종교의 비방, 각종 행사의 종교적 진행, 교내에서 선교활동 허용, 진학 유도, 지원제 학교 학생모집요강에 종교교육 불명시, 동일 재단학교로의 진학 유도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자료 참조 <http://www.kirf.or.kr/>

37) 2006년 10월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종교의식 자율참여 장학지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종교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절대 우위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38) 김용표, <미국의 공립학교와 종교교육>《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8), pp. 95-109 참조. 미국 공교육제도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입장에는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학교교육에서의 어떠한 차원의 종교교육도 금지해야 한다는 종교교육 반대론이다. 둘째는 비종파적인 경신(敬神)교육의 부분적 허용론이다. 셋째는 특정 종파교육이 아닌 ‘종교적 교육’으로 인류 ‘공동의 신앙(common faith)’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을 잘 간파하고, 이의 교육적 적용이 무리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³⁹⁾ 종교적 권위나 신앙에 기초한 이론을 논증과 보편성의 추구를 그 특성으로 하는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V. 종교자유와 교육적 실천을 위한 제언

종교의 자유와 타종교에 관한 관용은 세계종교의 성자들이 한결같이 역설한 가르침이다. 또한 모든 종교인들도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 세계의 도처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근본적 원인은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교리나 감정에서 기인된 것이다. 또한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로 이익 집단화하려는 비종교적인 아집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결론으로서 현대의 종교자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적 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교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배타적인 절대 진리 주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⁴⁰⁾ 모든 전통과 도그마로부터도 자유로워질 때 참다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기초가 형성 될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종교의 절대 진리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자기 종교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다른 종교에서 궁극적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른 바 배타주의(exclusivism)에 대한 확신은 타 종교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참된 종교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는 종교적 도그마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생과 우주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통찰과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한 사랑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 종교에서 중요시 해온 정의와 심판의 논리보다는 지혜와 자비의 논리가 평화교육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셋째, 여러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종교학 교육의 확산과 아울러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이론과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세계종교의 교설에 내포되어 있는 다원주의적 요소에 대한 탐색과 함께 타 종교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위한 이론의 체계화와 그 실천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원주의적 종교 이해는 단순한 문화적 사회적 필요에서뿐만 아니라 성숙된 종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종교 간의 관용과 종교의 자

39) 존 듀이는 '공동의 신앙(Common Faith)'과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의 개념을 통하여 제도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보편적 종교성 교육을 제안하였다. "Here lies one aspect of the emancipation of the religious from religion" John Dewey, A common faith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34), pp. 9-12.

40) Abe Masao. 변선환 역, 《선과 현대신학》(서울: 대원정사, 1996), pp. 462-465 참조.

41) 위의 책, p. 462.

유 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세계종교의 공동 기반의 탐색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다.

넷째, 종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종교교육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와 올바르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종립학교 재단관계자나 교육 행정가들은 교육과 교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리주입교육의 비종교성과 비교육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종교교육이 학생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다. 학내 학생들의 종교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건학이념의 실천이란 명목으로 교육이 자발적인 회심을 유도하는 데에서 벗어나 강제로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종교교육은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도 그 성과가 의심되는 미숙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종립학교는 건학이념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교육적이며 장기적으로는 학교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교단과 재단과 학교 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역할을 설정하는 데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은 미국의 종교계 사립대학의 설립재단인 교단과 재단과 대학과의 관계 설정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한 바 있다.⁴²⁾ 종교재단은 대학은 대학의 논리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족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³⁾ 그리하면 발전된 대학과 거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후에 종교교단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여섯째, 대부분 종립학교에서는 종교적 이념에 입각한 인간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 종교의 개념과 교육의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된 종교는 전통적이고 제도화된 종교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는 종교는 “삶의 깊은 의미를 지닌 모든 것(Involving the depth of meaning in life)”⁴⁴⁾이라고 해석하며, “우리가 느

42) John Henry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이 책은 1852년 출판 이래 대학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회와 대학과의 관계에 대한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The Idea of a University*에 대한 연구서로는 Jaroslav Pelikan, *The Idea of a University: A Reexamin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1992) 참조.

43) “대학은 보편적 지식의 전수에 있지 종교적인 수련의 기관이 아니다. 대학의 본질이 도덕이나 종교적인데 있다면 대학이 무엇 때문에 학생들을 받아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그 목적이 종교적인 데 있다면 과학과 문학이 이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의문이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영역이나 교회와의 관계 사이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의 원조 없이 대학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교회는 다만 통합과 협조를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교회에서 먼저 인식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종교적인 것과 대학사이에 거리를 두는 일에 협조 할 때 대학은 그 본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대학을 설립한 목적에 맞는 일인 것이다.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John Henry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서문 요약.

44) Ninian Smart & D. Holder eds, *New Movement in Religious Education* (London: Temple Smith, 1975), p. 18, John Sealey,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5), p.31-33 참조.

낄 수 있는 것으로 의미심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삶의 그 어느 것도 종교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⁴⁵⁾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가 다 종교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육은 종교교육’⁴⁶⁾이며 ‘제대로 된 교육은 다 종교교육’일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교육정책 당국은 종립학교에서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교육평준화 정책과 종교교육간의 마찰을 해소할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며 종교교육의 자유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⁴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와 교육은 자유를 그 본질로 해야 한다. 교육은 선입견이나 교조적 사고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학생들에게 항상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창조적 이해의 능력을 키워주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다원주의 시대의 종교자유 문제는 이제 단순한 종교적 관용의 단계를 넘어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의 요구로서 모든 다른 자유의 지주가 되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야 하며, 종교교육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正藏 8권, no. 235.
 《雜阿含經》, 大正藏 2권, no. 99.
 《오픈 성경》, 아가페 출판사, 1986.
 The Holy Qur'an, 이슬람 국제출판국. 198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Abe Masao. 변선환 역, 《선과 현대신학》. 서울: 대원정사, 1996.
 Brainton, Roand H. *The Trail of Religious Liber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1.
 Dewey, John. *A Common Faith*.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34.
 Hirst, Paul H. "Education, Catechesis and Church School",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81(3-3).
 Knitter, Paul F.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

조.

45) "Everything in life may have religious meaning if it is thought to hold sufficient depth of value." John Sealey,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5), p. 33 참조.

46) 위의 책, p. 33.

47)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확대하거나, 평준화 제도를 국·공립학교는 유지하되 사학은 학생 선발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New York; Orbis Books, 1985.
- Newman, John Henry. *The Idea of a Universit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Pelikan, Jaroslav. *The Idea of a University: A Reexamin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Sealey, John.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5, 강돈구 역, 《종교교육이론》. 서울: 서광사, 1992.
- Smart, Ninian & Holder, D. eds. *New Movement in Religious Education*. London: Temple Smith, 1975.
- Swidler, Leonard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 ed. *Religious Liberty and Human Right in Nation and in Religions*. Philadelphia: Ecumenical Press, 1986.
-, *After the Absolute: The Dialogical Future of Religious Reflec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Toynbee, Arnold. ed, *The Christianity: Judaism, Hellenism and Background to the Christian Faith*. New York: World Publishing. 1969.
- Yong Pyo Kim, "Religious Freedom in Buddhism", *Fides Et Libertas: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 2002.
- 김용표, <미국의 공립학교와 종교교육>《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8.
-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고시계》 95/10
- 전영배, 《외래사상과 민족문화: 종교·사상교육》. 서울: 보문출판사. 1990.
- 中村元, 석진오 역,《종교와 사회윤리》. 서울: 경서원, 1999.
- 최운진, <청소년 인권으로 본 학내종교자유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학교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06.
- 최철윤, <종교의 자유-침해의 유형과 그 구제를 중심으로> 《일반법학》8, 2003.
- 황규호, <자유교육에서의 종교의 위치>, 《도덕교육연구》 제6집 .1994.

원고접수: 2006년 11월 11일 1차심사: 11월 17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김용표

① 전공: 종교학, 불교학, 종교교육학 / 소속: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불교교육학, 불교해석학, 비교종교철학

③ 주요논저: 《불교와 종교철학》,《경전으로 본 세계종교》(공저), 《한국종교와 인격교육》(공저)

④ E-mail: sunyata@donguk.edu

Abstract

Meaning of Freedom in Religion and Education

Yong-pyo Kim

Dongguk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freedom in religion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religious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 in the current religiously pluralistic society will be examined. Essentially both education and religion tend to seek the ultimate truth. Religious truth seeks ultimate spiritual truth while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free people. However, there always exist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 religious freedom and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in religious schools, which emphasize the educational ideology based on specific religious dogmas.

The problems of religious freedom in the religious schools derive from an ambiguous attitude that cannot divide the definite line betwee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The purpose and essence of education is to teach universal knowledge, not to propagate a specific religion. Despite that, a non-educational ego centric mind set to make the schools the place of religious missionary work brings about the infringement on the religious freedom. Accordingly, it is quite reasonable that the founding ideology of religious school should be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universal education. The current issue of religious freedom is mainly caused by the policies of education authorities. The so-called equalization policy has deprived students of the freedom to choose their schools. On the other hand, it has limited schools the freedom to choose their student.

Here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to map out a way to settle wisely the current problems and dilemmas of religious education. Education should be free from preconceived opinions and the doctrinal way of thinking.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to encourage students to cultivate their creative powers and to understand the ever-changing modern world. The religious freedom of the pluralistic age should be complete and perfect far beyond the stage of religious tolerance.

Religious freedom is the very demand of human dignity. This freedom is an inherent right of human kind and also the basis of all other freedom. Henceforth every attempt to infringe on religious rights should be discouraged and freedom of education should be exercised within the framework of keeping religious freedom. In conclusion, pluralistic religious education is the best solutions to settle the current problems of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freedom, Pluralism, Religion-founded school